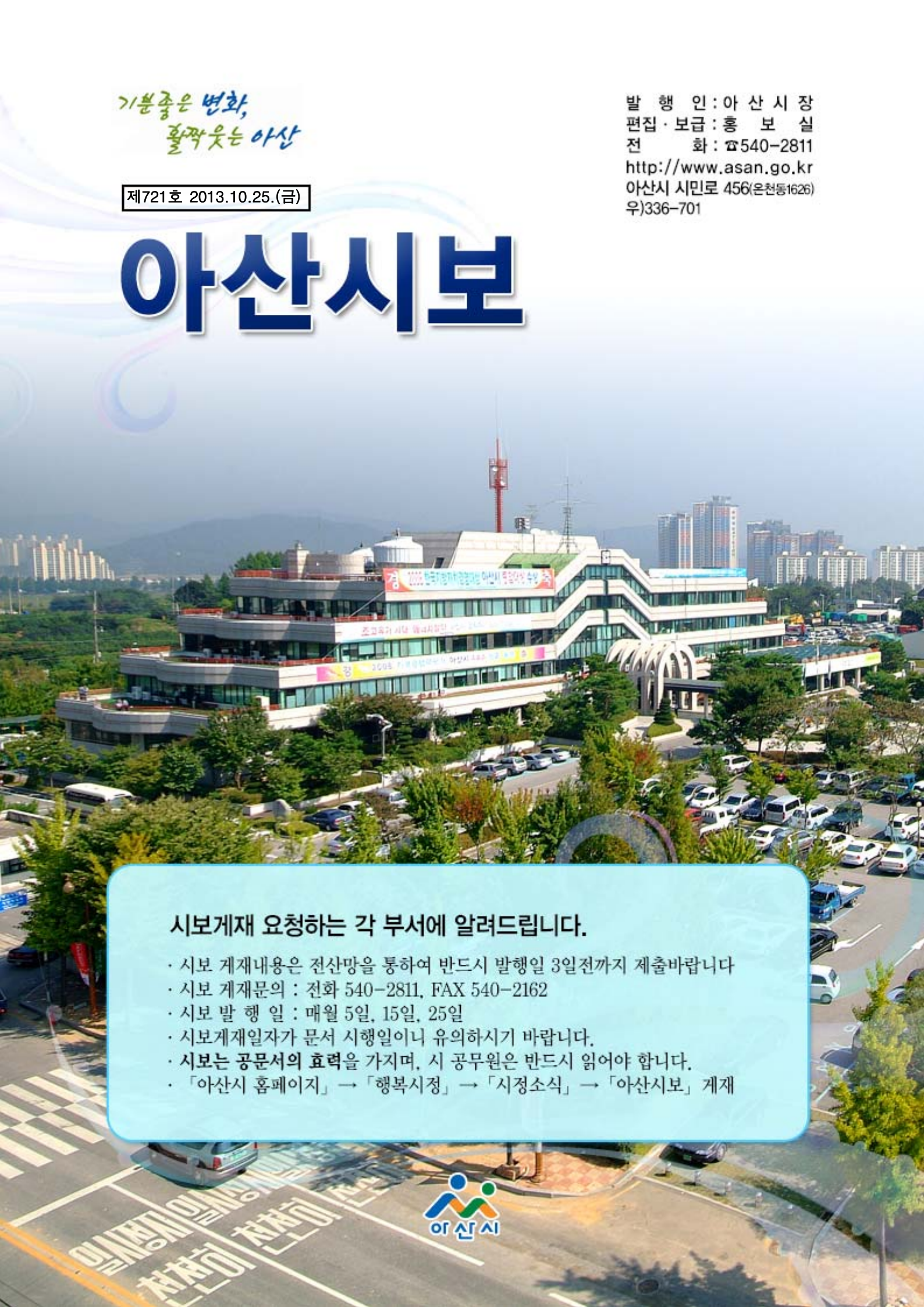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발 행 인 : 아 산 시 장
편집 · 보급 : 홍 보 실
전 화 : ☎540-2811
http://www.asan.go.kr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1626)
우)336-701

제721호 2013.10.25.(금)

아산시보



시보게재 요청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시보 게재내용은 전산망을 통하여 반드시 발행일 3일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시보 게재문의 : 전화 540-2811, FAX 540-2162
- 시보 발 행 일 : 매월 5일, 15일, 25일
- 시보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아산시 홈페이지」 → 「행복시정」 → 「시정소식」 → 「아산시보」 게재

아 산 시

【 게 재 순 서 】

조 례

○ 제2013-1200호(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 4

○ 제2013-1201호(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

○ 제2013-1202호(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제2013-1203호(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7

○ 제2013-1204호(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 68

입 법 예 고

○ 제2013-3호(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4

○ 제2013-1408호(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3

○ 제2013-1411호(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8

○ 제2013-1427호(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3

○ 제2013-1440호(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33

○ 제2013-1445호(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재 공고)---------- 144

고 시

○ 제2013-316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55

○ 제2013-317호(도시계획시설(둔포:소로2-5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57

○ 제2013-318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9

○ 제2013-319호(온천천 복개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아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3

○ 제2013-320호(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세일철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164

○ 제2013-321호(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171

○ 제2013-322호(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172

○ 제2013-323호(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173

공 고

○ 제2013-1402호(2013년 3/4분기 임대사업자 임대 조건 신고 현황 공고)---------- 175

○ 제2013-1403호(도로지정공고)---------- 180

○ 제2013-1416호(도로지정 공고)---------- 181

○ 제2013-1424호(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홍진우-미래에너지기술) 공시 송달)---------- 182

○ 제2013-1429호(도로지정공고)---------- 183

○ 제2013-1430호(도로지정공고)---------- 184

○ 제2013-1437호(도로지정공고 [오연택])---------- 185

○ 제2013-1441호(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건 공시 송달 공고)-------- 186

○ 제2013-1451호(온양전통시장 공공공지 조성사업 토지 등의 출입공고)---------- 187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조례 제1200호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에 선도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인권옹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또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아산시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시상 등) ① 시상 인원은 2명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1. 장애인 인권상 1명
2. 장애극복상 1명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과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읍·면·동장 또는 시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읍·면·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시민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조례 제1201호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교환·분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라. “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아. 기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아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 관련 실·국장 및 공무원(경제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역 및 지원 계획
6.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지방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1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0조(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한 주간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를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조례 제1202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시민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한다.

제1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3(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시설의 점검) 시장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전거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 혜택 제공) ①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의 2, 제15조의 3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공자전거의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공공자전거의 이용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
3.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1회 3시간 이내로 한다.
4. 공공자전거를 대여받은 자가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5. 자전거를 대여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진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아산시 교육청”을 “아산시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조례 제1203호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

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옥외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옥외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옥외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에 해당하는 경우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광고물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② 영 제26조제2항의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협의회에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외에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주민협의회의 조치사항) ① 주민협의회가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

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조치사항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그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

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건물면적을 제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및 광고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및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영 제32조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목하는 위원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5.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 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안건의 제출방법과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②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 검사의 시설·장비 및 검사원의 자격·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 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준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

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

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20만원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4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5만원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55만원
- 5.0㎡ 이상 6.0㎡ 이하	65만원
- 6.1㎡ 이상 7.0㎡ 이하	75만원
- 7.1㎡ 이상 8.0㎡ 이하	85만원
- 8.1㎡ 이상 9.0㎡ 이하	9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110만원
- 10.0㎡ 이상 12.0㎡ 이하	13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45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65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85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면적 20㎡ 이상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0만원
- 21.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5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6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8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3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5,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4,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7,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하. 벽보(1건)	3,000원
거. 전단(1건)	3,0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제17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안전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3만원
- 0.6㎡ 이상 0.8㎡ 이하		22만원
- 0.9㎡ 이상 1.0㎡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4㎡ 이상 1.6㎡ 이하		50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0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4㎡ 이상 1.6㎡ 이하		33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4㎡ 이상 2.6㎡ 이하		67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다. 벽보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3호 및 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업소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옥외광고업등록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표시위치	⑫ 표시기간	⑬ 광고내용	⑭ 준공일자	⑮ 성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보존용지(1종) 70g/㎡]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아 산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 >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아 산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번호	② 신청일자	신청자			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의 규격	⑩ 검사일자	⑪ 검사구분	⑫ 검사결과	검사자			⑯ 비고
		③ 성명	④ 업소명	⑤ 주소								⑬ 소속	⑭ 직명	⑮ 성명	

364x257㎜[보존용지(1종) 70g/㎡]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 . >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련번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보존용지(1종) 70g/㎡]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호	② 일시	③ 허가신고번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고
			④ 성명	⑤ 업소명	⑥ 전화번호	⑦ 주소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광고내용	

364x257㎜[보존용지(1종) 70g/㎡]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 생 년 월 일	비 고

210x297㎜[보존용지(1종) 70g/㎡]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 .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조례 제1204호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인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 신청 및 소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응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①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제9조에 따른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위촉 해제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의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선임이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청렴서약서 징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4조(위촉기간 및 위촉 해제)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2.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5조(자문의 절차 등) 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 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①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현황 공개)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소송 수임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① 고문변호사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률분야 교수(단, 해당자 없을 시 인근대학 가능)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임기까지만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문변호사 자문·소송수행 평가표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

변호사명				
건 명				
항 목	내 용	배점 (자문/소송)	평점	비고
①정 확 성	질의에 부합하는 자문이나 답변이 이루어졌는가?	20/20		
②유 용 성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20/15		
③적 시 성	자문이나 답변의 회신기일은 적절하였는가?	20/15		
④친 절 도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하였는가?	20/15		
⑤난 이 도	자문이나 소송의 난이도가 높았는가?	20/15		
⑥가 점 (승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승소하였거나 판례가 변경되었는가?	0/20		
평가합계		100/100		

※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 종류	사건명	의 뢰 년월일	의 뢰 내 용	회 신 년월일	회 신 내 용	비 고

※사건종류 : 소송사건, 이의신청, 소원,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아산시 공고 제 2013 - 3호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토종비결”에서 “아산맑은”으로 바뀌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2013. 9. 16.)으로 인해 관련 시행규칙 조문 중 토종비결 문구를 “아산맑은”으로 개정코자 함

○ “아산맑은” 브랜드 품목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를 비롯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표 사용 관련 신청, 허가,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규정 강화

3. 주요내용

○ 제명, 조문, 별표, 별지 문구 중 “토종비결”을 “아산맑은”으로 변경하여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을 도모 함

○ 현 직제에 맞고,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아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 재 정비(안 제2조)

○ 공동상표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청 대상자 규정 개정 및 신청 제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공동상표 사용 허가 심사 시 평점으로 판정을 낼 수 있도록 심사 기준표 개정(안 제13조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5.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참조 : 유통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 제출 방법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처 : 아산시농업기술센터(유통지원과 마케팅팀)
  - 주소 : (우) 336-812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
  - 전화: (041) 540-2072 팩스: (041) 540-2606

붙 임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아산시 규칙 제 호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토종비결” 을 “아산맑은” 으로 한다.

제1조 중 “토종비결”을 “아산맑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아산시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농정업무 담당과장
3. 축산업무 담당과장
4. 산림업무 담당과장
5. 농특산물 유통업무 담당과장
6. 생산기술 지도업무 담당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 농산물유통 담당팀장

2.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 경제분야 담당팀장
3.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체장
4.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를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촉의 해제)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제6조제3항 중 "농산물 유통업무 담당팀장"을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항"을 "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신청대상)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및 생산·가공시설을 시에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둔 시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한다.

② 작목반 및 작목회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개 농가 이상이 작목반 및 작목회를 조직한 경우에 한 한다.

③ 개인 농가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 되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평점이 “0”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음
2. 전체 심사항목 중 평점이 “6”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2개 이하
3. 전체 심사항목 중 평점이 “10”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상

제19조 중 “제7조3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지원은 10개 이상 농가로 구성된 신청자에 한 하여 지원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산맑은"**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아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생략) 2. **농산물업무 담당과장** 3. ~ 4. (생략) 5. **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업무 담당과장** 〈신 설〉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 농산물유통 **담당과장** 2. ~ 3. (생략)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아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1. (현행과 같음) 2. **농정업무 담당과장** 3. ~ 4. (현행과 같음) 5. **농특산물 유통업무 담당과장** **6. 생산기술 지도업무 담당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담당팀장** 2.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생략)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4조(위촉의 해제)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농특산물 마케팅업무 담당팀장 ----------.
제8조(회의록) ① (생략) ② 회의록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5년----------.

현 행	개 정 안
제9조(품질관리지도원) ①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지도원은 품목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품질관리지도원) ① ----------**제4호**----------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 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4. (생략) ③ (생략)	제10조(사용허가 신청 및 기간) ① -------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개인농가,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및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작목별 10 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 한다.** ②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가공시설을 아산시에 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청대상)**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및 생산·가공시설을 시에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둔 시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한다.** ② **작목반 및 작목회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개 농가 이상이 작목반 및 작목회를 조직한 경우에 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개인 농가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 되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심사기준) ① (생략) ② (생략)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음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이하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이상	제13조(심사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평점이 "0"---------- 2. ---------- 평점이 "6"으로 ---------- 2개 --- 3. --------- 평점이 "10"으로 --------- 6개 ----
제19조(사용 허가 번호 부여) 조례 제7조3항에 의한 사용 허가 번호는 별표 4와 같이 부여 한다.	제19조(사용 허가 번호 부여) ----------제3항----------.
제20조(포장재 사용 신청) 공동상표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포장재 사용 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는 10개 이상 농가로 구성된 신청자에 한 하여 지원한다.

[별표 1]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아산맑은 심사기준표(제13조 관련)

1. 농산물(농, 임, 수산물, 기타 정하지 않은 품목 준용)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1.생산자 자질·능력 (회사법인)	가. 생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 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다.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	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 영농법인)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3.대외신용도	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4.생산기반 규 모	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쌀 류 : 아산맑은쌀 가공RPC - 과실류 : 배,사과 7ha이상, 포도 1.0ha이상 - 채소류 : 오이4ha이상, 토마토1ha이상, 배추2.0ha이상, 쪽파2.0ha이상 - 버섯류 : 느타리 0.6ha이상, 새송이 0.9ha이상, 표고 6ha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쌀 류 : 아산맑은쌀 가공RPC - 과실류 : 배,사과 5ha이상, 포도 0.5ha이상 - 채소류 : 오이3ha이상, 토마토0.5ha이상, 배추1.0ha이상, 쪽파1.0ha이상 - 버섯류 : 느타리 0.4ha이상, 새송이 0.6ha이상, 표고 4ha이상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쌀 류 : 아산맑은쌀 가공RPC - 과실류 : 배,사과 3ha이상, 포도 0.3ha이상 - 채소류 : 오이1ha이상,토마토0.3ha이상,배추0.50ha이상,쪽파0.5ha이상 - 버섯류 : 느타리 0.2ha이상, 새송이 0.3ha이상, 표고 2ha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5.생산포장 입 지	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6.생산기술 수 준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7.생산시설 및 자재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8.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9.품질관리 열 의 도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	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2. 축산물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생산자(조직) 자 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3.대외신용도	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 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4.사육규모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4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8,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50,000수 이상(재래종 3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50,000수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20,000수 이상 (재래종 2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00,000수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0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80,000수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5.축사 (생산지)입지	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6.사양기술 수 준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7.사육시설 및 기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8.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9.품질관리 열 의 도	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10.판매처 확 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11. 기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 축산물을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8 6 0

3. 가공품류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생산자 (조직), 자질,능력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3.대외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	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5.제 조·가 공 생산지입지	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6.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	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7.생산시설 및 자재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8.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9.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	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10.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10 8 6 0

[별표 2]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아산맑은 생산관리기준(제14조 관련)

□ 공 통

구 분		생 산 관 리 기 준
농임수산물	토 양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 수	o 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상수원수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쌀의 경우는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포장	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종 자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축산물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o 사육기간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축산물의 도축·가공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 란	계란의 경우 방사유정란 및 유정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생산조건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방사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방사사육하여야 하며, 방사면적은 1수당 1.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평사사육하여야 하며, 평사면적은 1수당 0.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공식품		o 제조 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아산시내 생산 농특산물로 사용하여야 하고 아산시내에서 가공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아산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 품목류 별

○ 배, 사과, 포도, 기타(특별히 정하지 않은 과실류는 본 규정 준용)

구 분		생 산 관 리 기 준
과실류	품 종	품종은 □□고품질 우수품종□□이어야 한다.
	재배규모	재배규모 : 1ha 이상 (또는 지속적 생산,납품 가능한 면적또는 규모) -품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며 면적이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둠
	상품화율	상품화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물관리	단기 또는 장기 저장 시설이 있어야 한다.
	생산자자질	생산 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가이어야 한다.
	토 양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2 동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 수	o 하천수, 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10조2,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포장	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약	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 료	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시비량 및 토양검정시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채류

구 분		생 산 관 리 기 준
과채류	품종(종자)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재배규모	o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규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오 이 : 1~4ha 이상 - 채 소 : 1~4ha 이상 - 토 마 토 : 0.3~1.0ha 이상 - 그 외 품목은 적정규모를 심의위원회에 판단함
	토 양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2 동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 수	o 하천수, 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10조2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포장	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약	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비 료	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시비량 및 토양검정시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사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제 호

품질관리지도원증

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인)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람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며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 허가신청서

신청인	생산자명		조직원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출하기간	~	경영규모	(ha,두,평)	
	생산계획량	톤	상표사용출하계획량	톤	
	선별장, 포장(공장, 사업장) 소 재 지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	주 원 료		부 원 료		
	주생산지역				
시마크 등 병행사용 여부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축·임·수산물	가 공 품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 기관발행 확인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3-1호 서식]

품 질 준 수 각 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 하 계 획 량	

1. 본인 등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아산맑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아산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연장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지정내역	허가번호			
	품 목 명			
	허가기간			
사유	기 간			
	사 유	사용기간 만료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재신청)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

1. 신청내용

신청인	생산자명		참여농가수	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 재 지				

2. 심사결과

분 야	항 목	평 점
가. 일 반 여 건	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10, 8, 6, 0) (10, 8, 6, 0) (10, 8, 6, 0)
나. 생 산 여 건	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	(10, 8, 6, 0) (10, 8, 6, 0) (10, 8, 6, 0) (10, 8, 6, 0)
다. 품질관리 여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10, 8, 6, 0) (10, 8, 6, 0) (10, 8, 6, 0)
계	10개 항목	10점 : 개, 8점 : 개, 6점 : 개, 0점 : 개

3. 심 사 의 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지도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지도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지도원	소 속	성 명	(인)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상표명			허가번호	
사용권자	생산자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사용내용	대상품목			
	허가물량			
	사용기간			
특기사항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품 질 준 수 사 항

1.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18조제1호**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표시 사항에 기재된 품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신용을 추락시킨 생산자는 허가취소와 동시 공동상표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출하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4. 품질관리지도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출하 후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공동상표와 관련된 사항은 **유통지원과(마케팅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 신청서

신청인	허가번호					
	생산자명 (대표자명)			품목(품종)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경영규모	(ha,두)	생산기간	~	출하기간	~
	생산계획량	톤		출하계획량	톤	
	상표사용방법					

	규 격	수 량	납품기한	확 인
포장재신청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공고 제2013-1408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8.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주차장 조례

2.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로 강화하고,

○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정정함.

4. 관련규정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1.0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처 : 아산시청(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주소 : (우)336-701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온천동1626번지)
  - 전화 : (041)540-2373 / 팩스 : (041)540-2362

붙 임 :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건축심의신청 또는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35㎡당 1대
4. 숙박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5.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90㎡초과 135㎡이하의 경우에는 1대 - 시설면적 135㎡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5㎡ 초과 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6.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 이상
7.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미만】 - 전용면적 85㎡당 0.7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0.7대 이상 【전용면적 60㎡ 이상 ~ 100㎡ 미만】 - 전용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100㎡ 이상 ~ 130㎡ 미만】 - 전용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전용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 이상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2인당 1대 - 관람장 정원 80인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산업단지내 공장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 - 단, 연면적 10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은 525㎡당 1대

참고 **현 행**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제1항 및 제4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35㎡당 1대
4. 숙박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5.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90㎡초과 135㎡이하의 경우에는 1대 - 시설면적 135㎡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5㎡ 초과 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6.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전용면적 60㎡ 당 1대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 당 1대 이상
7.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미만】 - 전용면적 85㎡당 0.7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0.7대 이상 【전용면적 60㎡ 이상 ~ 100㎡ 미만】 - 전용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100㎡ 이상 ~ 130㎡ 미만】 - 전용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전용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 이상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2인당 1대 - 관람장 정원 80인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산업단지내 공장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 - 단, 연면적 10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은 525㎡당 1대

아산시 공고 제 1411호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여「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근거를 명확하고,

○ 조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8조)

다. 주차장 설치 융자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관련 조문 삭제

4. 입법예고기간 : 2013년 10월 18일 ~ 2013년 11월 8일(21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아산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주소 : (우)312-701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2층
- 전화 : 041) 540-2951, 팩스 : 041) 540-2362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 및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설치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 관리수탁자 납부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관련)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41조 관련)
6. 교통유발 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제60조 관련)
7.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관련)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 및 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관련)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 및 과태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관련)
1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 및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84조 및 제86조 관련)

1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제51조 관련)
12. 견인자동차의 운영수입금(「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2조 관련)
13. 국·도비 보조금
14.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4호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포함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5.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주차장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7. 차입금의 상환

제4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 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 중에 있는 아산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아산시 공고 제 2013 - 1427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2013. 6. 21 법률 제24631호로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정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심의생략 재산의 범위, 대부요율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 및 임기, 해촉 사유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의 범위를 5천만원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안 제5조제2항)

다. 주거용 대부의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요율 수준인 연2%로 인하
(안 제28조제5항)

라. 조례로 정하도록 영에서 위임한 1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변상금의 분납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 금리 2.5% 및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 3% 수준으로 정함 (안 제35제2항, 제3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의 2)

마. 2013년 12월 31일 이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점유·소유한 건축물 및 종교시설로 점유한 공유지와 5년 이상 직접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사람을 수의매각 대상에 포함
(안 제40조제4호, 제7호, 제8호)

바.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조문과 문구 및 조항 정비
(안 제2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2조제1항, 제39조, 제4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회계과에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 제출 방법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처 : 회계과(재산관리팀)
  - 주소 : (우) 336-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 전화: (041) 540-2867 팩스: (041) 540-2134

붙 임 :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조개정 조례안 1부. 끝.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 2013. . .
제 출 자 :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 2013. 6. 21 법률 제24631호로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정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심의생략 재산의 범위, 대부요율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 및 임기, 해촉 사유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의 범위를 5천만원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안 제5조제2항)

다. 주거용 대부의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요율 수준인 연2%로 인하
(안 제28조제5항)

라. 조례로 정하도록 영에서 위임한 1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변상금의 분납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 금리 2.5% 및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 3% 수준으로 정함 (안 제35제2항, 제3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의 2)

마. 2013년 12월 31일 이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점유·소유한 건축

물 및 종교시설로 점유한 공유지와 5년 이상 직접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사람을 수의매각 대상에 포함

(안 제40조제4호, 제7호, 제8호)

바.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조문과 문구 및 조항 정비

(안 제2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2조제1항, 제39조, 제4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5천 만원 이하)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규제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13. 10. . ~ . . 의견없음

(※ 의견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2. 아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인
3. 공유재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당연직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⑨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⑩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⑪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조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중 "2천만원이하의"를 "5천 만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나목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를 "이하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로 하며, 다목의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 만원 이하의"를 "이하이고 대장가액 5천 만원 이하의"로 한다.

제27조중 "제2조제6호의2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하고, 제2호중 "제7조 및 제8조의"를 "제7조, 제7조의 2, 제8조의"로 하며, 제3호중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8조중제3항제3호는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의 연 3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인다.

제38조제2항과 제3항중 “6퍼센트의”를 “3퍼센트의”로 한다.

제39조 본문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공유지에 건축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점유, 소유한 건물로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공유지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매각할 경우. 다만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7.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시로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를 삭제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6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 2(과오납금 반환가산금)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3인과 각 국장, 과장급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중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 2. 아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인 3. 공유재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⑥ 의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⑦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자가 된다.
	⑨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현 행	개 정 안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자가 된다.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⑩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를 보좌한다. ⑩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관한 사항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5천 만원 이하의 ----------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현행과 같음) 나 . ----------이하이고 대장가액 5천 만원이하의---------- 다 . ----------이하이고 대장가액 5천 만원이하 의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1. (생략)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② (생략) 1. ~ 2.(생략)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생략)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제2조제1항7호 ---------- 1. (현행과 같음) 2. ---------- 제7조, 제7조의 2, 제8조의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현 행	개 정 안
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략)	3 . ---------- ---------- ----------지 식 산 업 센 터 로 ---------- ------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1. ~ 6. (생략) ⑤ <신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④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 (삭제)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 1 3 조 제 9 항 ---------- ---------- ---------- ---------- ---------- ---------- ----------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이내 4회 분납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1.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의 연 3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인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략)	3 퍼 센 트 의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③ 3퍼센트의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
5. ~ 6. (생략)	1. ~ 4. (생략)
7. <신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8. <신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공유지에 건축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점유, 소유한 건물로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공유지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매각할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 ~ 6 (생략)
	7.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시로부터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3조의 2 <신설>	제44조 (삭제)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1. (삭제)
	2. ~ 4.(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 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7조 (분수림의 설정)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분수림(分收林)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다.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816호, 2006.12.30, 조문 삭제]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⑦ (조문 내용 생략)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⑥ (조문 내용 생략)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 ⑤ (조문 내용 생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생략)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

4. 다음 각목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생략)

나. 일반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 지역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

제13조(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

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일반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 그 밖의 광역도내 시지역의 동지역에서는 2,000㎡ 이하,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 지역에서는 3,000㎡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2.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제15조(매각 방법) 일반재산의 매각은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1.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아산시 공고 제 1440호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아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실천 및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관광아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스마일 운전기사의 대상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스마일 운전기사 표창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14조)

라. 스마일 운전기사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4. 입법예고기간 : 2013년 10월 23일 ~ 2013년 11월 13일(21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아산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주소 : (우)312-701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2층
- 전화 : 041) 540-2732, 팩스 : 041) 540-2362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나. 비용추계 : 붙임(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조례안 : 붙임(조례안)

(2) 규제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시”라 한다)에서 택시 또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실천 및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관광아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시 관내 업체에 종사하는 법인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스마을 운전기사”란 운수종사자 중 친절서비스 등으로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표창을 수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수종사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발굴하여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친절운행의 실천으로 관광객과 시민으로부터 추천된 자
2. 친절운행 실천 등 미담사항이 언론에 소개된 자
3.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친절운행 정착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4조(표창절차) ① 제3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② 스마일 운전기사 추천대상자를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절차로 공개 검증하여 선정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표창절차는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은 제3조의 시장 표창을 수상한 운전자 중에서 아산시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을 위하여 아산시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 교통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개인택시조합 대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대표 각 1명
4. 교통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스마일 운전기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기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을 운전기사 선정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절 및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사업
2.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
3. 스마일 운전기사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제16조(스마일 운전기사 관리)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고 친절서비스로 아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스마일 운전기사 취소)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 을 선고 받은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4. 교통법규 위반 등 지정 목적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자의 명예가 훼손 될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③ 군번 (군인의 경우)								
④국적(외국인에한함)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 (직급·계급)					⑩ 근무(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								⑫ 공적분야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스마일 운전기사 관리명부

연 번	표 창 년월일	훈 격	스마일 운전기사				주요공적	비 고
			소속회사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붙임 1 **비용추계서**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스마일 운전기사를 선정하여 관광아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스마일 운전기사를 선정 및 지원하기 위함

○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위원회 설치·운영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 및 제15조

2. 비용 추계결과

□ **2014년도 예산 : 30,720천원**

○ **재정지원 추계비용 : 30,720천원**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당지급 : 6,720천원
  - 위원 회의수당 지급 : 70,000원×12회×8인 = 6,720천원
- 스마일기사 연수비 : 6,720천원
  - 연수비 지급 : 2,000,000원×12명 = 24,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재정지원액	30,720	-	-	30,720

4. 그 밖의 사항

○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을 월1회로 산정하였으나, 확대 또는 인원이 늘어날 경우 지원예산액이 조정 될 수 있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30,720	40,000	40,000	40,000	40,000	190,720
세 출		30,720	40,000	40,000	40,000	40,000	190,720
재원조달		30,720	40,000	40,000	40,000	40,000	190,720
의존재원	소 계						0
	보 조 금						0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30,720	40,000	40,000	40,000	40,000	190,720
	지 방 세	30,720	40,000	40,000	40,000	40,000	220,72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민자 등)							

아산시 공고 제 2013-1445호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아산시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아 산 시 장

1. 제정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여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함으로써 재난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로 효과적 대응을 위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목적(제1조), 정의(제2조), 현장대응 단계(제3조)

나.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제4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제5조), 업무연락관 파견(제6조), 현장지휘관 지정(제7조)

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1)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제8조), 재난현장 상황전파(제9조), 재난지역 주민대피(제10조)

(2) 제2절 재난현장 출동 : 재난현장 출동 요청(제11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제12조), 재난현장 출동지원(제13조)

(3) 제3절 재난현장 조치 : 통합지휘소의 위치(제14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제15조), 재난현장 통합대응(제16조), 재난현장 통제(제17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제18조)

(4)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제19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제20조), 재난안전통신망 긴급복구(제21조)

라.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 복구체계로의 전환(제22조), 통합지휘소 철수(제23조), 권한의 위임(제24조)

마. 부칙 : 시행일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아산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36-701/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전화 041-540-2416, 팩스 041-540-23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참고사항

○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아산시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담당자 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련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아산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

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아산시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련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아산시 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아산시 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아산시 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아산시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아산시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신고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련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장비·인력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기타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아산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아산시 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휘소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업무 담당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아산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련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아산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준비) ①아산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아산시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아산시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아산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아산시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

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아산시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아산시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①현장지휘관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아산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아산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이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 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고시 제2013-31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아산시 온천동 94-6번지 일원에 온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94-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2) 명 칭 : 온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주차장설치)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정	23호 주차장	온천동 94-6번지 일원	2,749	
시행	23호 주차장	온천동 94-6번지 일원	2,749	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아산시장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4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7,302	2,749					
1	온천동	94-6	대	4,330	1,771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2	온천동	104-4	대	454	454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3	온천동	109-5	대	648	524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 고시 제2013-317호

도시계획시설(둔포:소로2-5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58-1번지 일원에 둔포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둔포:소로2-54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58-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둔포:소로2-54호)사업

2) 명 칭 : 도시계획도로(둔포:소로2-54호)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소로2-54호(L=112m, B=8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아산시장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4년 03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 붙임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종류	주소	성명
계		5필지		1,799	954					
1	둔포면 둔포리	458-1	답	1,100	640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2	둔포면 둔포리	458-9	답	389	4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3	둔포면 둔포리	461-41	전	89	89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4	둔포면 둔포리	461-43	도	54	54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5	둔포면 둔포리	457-9	대	167	167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 붙임 2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종류	주소	성명	
1	둔포면 둔포리	457-9	건물	기와,스레트	68	㎡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57-9	이홍섭					

아산시 고시 제2013-3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번지 일원의 순천향대학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및「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제2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3. 10. 25.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다.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940)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순천향대 학교	대학	신창면 읍내리 646번지 일원	471,549	-	471,549	1999. 11.22.	세부조성계 획변경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순천향 대학교	• 구역면적 변경없음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교육환경개선 및 원활한 학사행정을 도모코자 교육시설 증축 및 그로 인한 녹지용지 및 공공시설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471,549.00	**471,549.00**	-	100.00	
교 육 시 설		162,262.00	**162,544.00**	증 282	34.47	기본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등
연 구 시 설		3,516.00	**3,516.00**	-	0.75	산학연구동
녹지 용지	소 계	217,321.00	**214,840.00**	감 2,481	45.56	
	조 경 지	89,964.00	**87,483.00**	감 2,481	18.55	
	보 전 녹 지	127,357.00	**127,357.00**	-	27.01	원지형 보존지
공 공 시 설		88,450.00	**90,649.00**	증 2,199	19.22	도로, 주차장. 환경시설 등

나. 세부시설별 조서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교육시설용지	교육기본시설	인문사회학관	10,045	10,045		3,780.00	3,780.00		12,479.43	12,479.43		지상5층
		공학관	7,576	7,576		3,282.00	3,282.00		13,643.74	13,643.74		지상5층
		자연대학	7,071	7,071		2,643.00	2,643.00		13,237.95	13,237.95		지상5층
		의과대학	2,162	2,162		1,543.04	1,543.04		9,116.79	9,116.79		지상6층
		교육관(2)	1,047	1,047		362.25	362.25		1,800.00	1,800.00		지상5층
		유니토피아관	7,313	7,313		2,657.20	2,657.20		19,636.55	19,636.55		지하2층 지상10층
		대학원	3,163	3,163		737.10	737.10		3,715.30	3,715.30		지상5층
		종합관	9,410	9,410		3,300.00	3,300.00		12,600.00	12,600.00		지상4층
		★교육관(4)	**6,382**	**0**	**감 6,382**	**2,150.00**	**0**	**감 2,150**	**11,000.00**	**0**	**감 11,000**	**지하2층 지상6층**
		소계	**54,169**	**47,787**	**감 6,382**	**20,454.59**	**18,304.59**	**감 2,150**	**97,229.76**	**86,229.76**	**감 11,000**	
	지원시설	대학본부	3,336	3,336		1,199.00	1,199.00		3,367.50	3,367.50		지상3층
		학생회관	4,921	4,921		1,822.17	1,822.17		4,604.44	4,604.44		지상5층
		★학생식당 (구피닉스센터)	**2,381**	**2,381**		**744.44**	**661.52**	**감 82.92**	**7,618.72**	**1,237.52**	**감 6,381.2**	**지하1층 지상2층**
		국제교류본부	2,004	2,004		684.00	684.00		2,232.00	2,232.00		지상3층
		체육관	4,907	4,907		2,633.66	2,633.66		4,096.24	4,096.24		지상3층
		본부석(1)	272	272		156.00	156.00		214.50	214.50		지상2층
		도서관	9,814	9,814		2,077.70	2,077.70		11,745.88	11,745.88		지상5층
		학군단	1,445	1,445		427.78	427.78		1,242.86	1,242.86		지상3층
		★멀티미디어센터	**4,106**	**4,106**		**1,645.62**	**1,645.62**		**7,936.87**	**8,636.87**	**증 700**	**지하1층 지상6층**
		21세기학예관	6,964	6,964		2,928.10	2,928.10		9,984.77	9,984.77		지상5층
		본부석(2)	181	181		90.00	90.00		90.00	90.00		지상1층
		운동구창고(1)	56	56		26.00	26.00		26.00	26.00		지상1층
		대운동장	18,000	18,000								
		소운동장	9,508	9,508								
		테니스장	4,705	4,705								
		★농구장	**941**	**0**	**감 941**							
		소계	**73,541**	**72,600**	**감 941**	**14,434.47**	**14,351.55**	**감 82.92**	**53,159.78**	**47,478.58**	**감 5,681.2**	

- ★ 는 금회시공

구 분		시 설 명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교육시설용지	부속시설	운동부숙소	890	890		216.14	216.14		216.14	216.14		지상1층
		기 숙 사 (1)	2,680	2,680		417.30	417.30		1,412.40	1,412.40		지상4층
		기 숙 사 (2)				584.77	584.77		2,505.35	2,505.35		지상4층
		기숙사(여자)	2,038	2,038		758.68	758.68		3,559.20	3,559.20		지상5층
		변 전 실	827	827		247.95	247.95		247.95	247.95		지상1층
		경 비 실	220	220		88.90	88.90		88.90	88.90		지상1층
		온실관리동	1,368	1,368		533.48	533.48		1,557.76	1,557.76		지하1층 지상3층
		유 리 온 실	1,271	1,271		396.00	396.00		396.00	396.00		지상1층
		앙트레프레너관	2,813	2,813		937.62	937.62		4,484.77	4,484.77		지상5층
		기 숙 사 (4)	5,709	5,709		1,759.62	1,759.62		8,697.48	8,697.48		지하1층 지상6층
		기 숙 사 (5)	6,421	6,421		1,962.27	1,962.27		7,527.71	7,527.71		지상5층
		기 숙 사 (3)	1,682	1,682		626.52	626.52		3,366.18	3,366.18		지상5층
		버스승차장	220	220		90.00	90.00		90.00	90.00		지상1층
		기 숙 사 (6)	8,413	8,413		2,730.43	2,730.43		16,577.63	16,577.63		지하1층 지상8층
		★기숙사(7) **<구교육관(4)>**	**0**	**7,605**	**증 7,605**	**0**	**3,280.00**	**증3,280**	**0**	**21,500.00**	**증 21,500**	**지하2층** **지상8층**
		소 계	**34,552**	**42,157**	**증 7,605**	**11,349.68**	**14,629.68**	**증3,280**	**50,727.47**	**72,227.47**	**증 21,500**	
	계		**162,262.00**	**162,544.00**	**증 282**	**46,238.74**	**47,285.82**	**증 1,047.08**	**201,117.01**	**205,935.81**	**증 4,818.80**	
연구시설용지		산학연구동	3,516	3,516		1,293.24	1,293.24		6,693.99	6,693.99		지상5층
		계	**3,516**	**3,516**		**1,293.24**	**1,293.24**		**6,693.99**	**6,693.99**		
녹지용지		**★조 경 지**	**89,964**	**87,483**	**감 2,481**							
		보 전 녹 지	127,357	127,357								
		계	**217,321**	**214,840**	**감 2,481**							
공공이용시설용지		노 천 극 장	7,500	7,500								
		오수처리장	276	276		100.00	100.00		100.00	100.00		지상1층
		물 탱 크	673	673		25.00	25.00		25.00	25.00		지상1층
		★주 차 장	**30,299**	**31,571**	**증 1,272**							
		★도로 및 기타	**49,702**	**50,629**	**증 927**	**80**	**80**		**80**	**80**		
		계	**88,450**	**90,649**	**증 2,199**	**205**	**205**		**205**	**205**		
합 계			471,549.00	471,549.00		47,736.98	48,784.06	증 1,047.08	208,016.00	212,834.80	증 4,818.80	

- ★ 는 금회시공.

아산시고시 제2013 - 319호

아산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온천동 일원에 온천천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였기에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6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13. 10. 25.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①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8	공공공지	온천동 241-2일원	-	증) 2,106	2,106	-	

②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8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2,106㎡	•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발원지 위치에 상징성 및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신설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아산시 고시 제2013-320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일철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1.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0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세일철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25일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축척 1/5,00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1/1,200)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세일철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인주면 모원리 15-100번지일원	86,946	-	86,946	
변경	7	세일철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7	인주면 모원리 15-100번지 일원	• 구역명 변경 세일철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세일철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의 세분 변경 산업형 → 산업유통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분 폐지 (2011. 4. 14 일부개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86,946	-	86,946	100.0	
공업용지	52,000	증) 10,849	62,849	72.3	※ 도로 9,517㎡, 주차장 6,605㎡ 포함[1)]
공공시설용지	17,276	감) 13,113	4,163	4.8	
운동시설	3,333	-	3,333	3.8	
도로	8,804	감)7,974	830	1.0	
주차장	5,139	감)5,139	-	-	
녹지용지	17,670	증)2,264	19,934	22.9	

1)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및 주차장 부지는 공업용지 내에 포함하여 계획함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단지 내 기반시설)

1)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	52	830	-	-	-	1	52	830	-	-	-
중 로	1	52	830	-	-	-	1	52	830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기 정	-	-	ⓑ	4	-	161	가감속차로	1997. 2. 6	
	-	-	ⓒ	15	-	910	단지내 도로		
변 경	중 로	2	1	15	-	52	단지내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중 로 2 - 1	• 도로폭원 및 연장 조정 - L = 52m, B = 15m	• 공장시설 증축에 따른 공업용지 통합 구획으로 도로폭원 및 연장 조정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3	주차장	인주면 모원리 15-85	5,139	감)5,139	-	1997. 2. 6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	주차장	□폐 지 - 위 치 : 인주면 모원리 15-85 - 면 적 : 5,139㎡	□공장시설 증축에 따른 공업용지 통합 구획으로 주차장 폐지

3)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 녹지	인주면 모원리 15-26	17,670	증)2,264	19,934	1997. 2. 6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완충녹지	□변 경 - 위 치 : 인주면 모원리 15-26 - 면 적 : 17,670㎡ → 19,934㎡ (증2,264)	□공장시설 증축에 따른 공업용지 통합 구획으로 완충녹지 면적변경

4)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1	체 육 시설	운 동 시 설	인주면 모원리 15-129	3,333	-	3,333	1997. 2. 6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계		52,000	증)10,849	62,849		62,849	
1-1	1-1 블럭	49,260	증)13,589	62,849	인주면 모원리 15-136번지 일원	62,849	공장 및 야적장 사무실, 경비실
1-2	1-2 블럭	1,700	감)1,700	-	인주면 모원리 15-84번지 일원	-	-
1-3	1-3 블럭	1,040	감)1,040	-	인주면 모원리 15-86번지 일원	-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1-1 블럭	□변 경 - 면 적 : 49,260㎡ → 62,849㎡ (증13,589)	□공장시설 증축에 따른 가구면적 증가
1-2	1-2 블럭	□폐 지 - 면 적 : 1,700㎡ (감1,700)	□공장시설 증축에 따른 1-1블럭으로 편입
1-3	1-3 블럭	□폐 지 - 면 적 : 1,040㎡ (감1,040)	□공장시설 증축에 따른 1-1블럭으로 편입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	공업용지 1-1블럭	용 도	• 지정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 59.70%이하
		용 적 률	• 60.80%이하
		높 이	• 최고 2층 이하
1-2	공업용지 1-2블럭	용 도	• 지정용도 : 공장 부대시설
		건 폐 율	• 12.65%이하
		용 적 률	• 12.65%이하
		높 이	• 최고 1층 이하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6">1-1</td><td rowspan="6">공업용지 1-1블럭</td><td rowspan="4">용도</td><td rowspan="3">지정용도</td><td colspan="2">•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9차개정)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td></tr>
<tr><td>중 분 류</td><td>업 종</td></tr>
<tr><td>24</td><td>• 1차 금속제조업</td></tr>
<tr><td>권장용도</td><td colspan="2">• 공장 및 부대시설</td></tr>
<tr><td>불허용도</td><td colspan="2">•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colspan="2">건 폐 율</td><td colspan="2">• 60.00% 이하</td></tr>
<tr><td></td><td></td><td colspan="2">용 적 률</td><td colspan="2">• 150.00% 이하</td></tr>
<tr><td></td><td></td><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2">• 최고 2층(20m) 이하</td></tr>
</table>

마.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기정)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교차로 계획	A	•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진·출입동선	B	• 이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 감속차로 : B=4.0m, L=40.0m – 가속차로 : B=4.0m, L=85.0m
	C	• 사업지 특성상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가각정리(R=15m) 및 노면표시를 이용한 차량유도선 설치로 운전자에게 명확히 하여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도모 • ㉯동 북측 전면부 일방통행 Roundabout처리
보 행	D E	• 출퇴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 • 보행자를 위한 보도 설치(B=1.5m)
주차시설		• 법정주차대수 : 100대 • 계획주차대수 : 121대 (대형 11대, 소형 110대)
교통안전	F	• 사업지 진입도로에 진입안내 표지판 설치로 이용객 편의도모(2개소)
		• 이미지험프 설치(4개소) • 반사경 설치(2개소)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세일철강 지구앞 교차로 운영방안 수립 – 점멸신호 운영 • 사업지내부도로 차로운영방안 수립
진·출입동선	– Ⓐ Ⓑ –	• 구국도 34호선(아산호로)상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 가속차로 설치 : B=4.0m, L=85.0m(테이퍼포함) – 감속차로 설치 : B=4.0m, L=40.0m(테이퍼포함) •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각정리(R≥15.0m)
대 중 교 통 및 보 행	– –	• 사업지 내부도로에 보도설치(B=2.5m)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13개소)
주차시설	–	• 적정주차대수 제시 – 법정주차대수 : 169대 – 주차수요대수 : 176대 (2018년 원단위법 기준) – 계획주차대수 : 239대(법정대비 : 141.4%, 수요대비 : 135.8%) – 대형차량주차 : 화물차량, 버스공용 ※ 대기차량 발생시 서측주차장 활용
교통안전 및 기타	– – – –	• 시거 불량지점에 반사경 설치 : 2개소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 : 2개소 •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1개소

고시 제2013-321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0. 24.

아 산 시 장

허 가 번 호 (허가 년.월.일)	제2013 - 061호 (2013. 10. 24)		
공유수면 의 종류	구거	소 유 자	국(건설부)
공유수면의 위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산37-5번지		
점 용 면 적	642㎡		
점 용 목 적	종교시설부지 및 진출입로		
실시계획 인가 대 상 여 부	인가 대상이 아님		
점 용 기 간	2013. 10. 23. ~ 2017. 12. 31.		
점 용 자	주 소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산35번지	
	성 명	대한불교조계종 윤정사 대표 남기영	

고시 제2013-322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0. 24.

아 산 시 장

허 가 번 호 (허가 년.월.일)		제2013 - 062호 (2013. 10. 24)		
공유수면 의 종류		구거	소 유 자	국(건설부)
공유수면의 위치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617번지		
점 용 면 적		19㎡		
점 용 목 적		제조업소 진출입로		
실시계획 인가 대 상 여 부		인가 대상이 아님		
점 용 기 간		2013. 10. 23. ~ 2017. 12. 31.		
점 용 자	주 소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월봉청솔아파트 207동 1312호		
	성 명	유 래 춘		

아산시 고시 제2013-323호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폐지 인가하고, 같은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아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아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아산시장, 아산시 시민로 456

3. 폐지사유 및 급수대책 :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설 폐지

4. 사업시행지 상세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붙임: 폐지시설 상세내역 1부. 끝.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No.	읍면동	리통	마을명	시설명	가구수	인구수	물탱크					관정						시설설치내용			양수설비내역			
							위치(리통 번지)	재질	용량(톤)	소독기(유,무)	안내표지(유,무)	위치(리통 번지)	계량기(유,무)	관경(mm)	수도꼭지(유,무)	안내표지(유,무)	기타	굴착깊이(m)	굴착지름(mm)	취수계획량(㎥/일)	동력장치(HP)	토출관 안쪽지름(mm)	설치깊이(m)	양수능력(㎥/일)
1	둔포	산전리	산전리	마을상수도	155	356	산전리 284-1	SMC	30	유	유	산전리 337-2	유	50	유	무		150m	250m/m	230㎥/일	5HP(3상)	50(스텐)	66m	230㎥/일
2	신창	신곡2	여우시	소규모급수시설	33	74	74	con'c	20	유	무	신곡2리 121	유	40㎜	유	무	2001년사업	120m	200m/m		3HP(3상)	40(백관)	60m	100㎥/일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6.9>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013년 3/4분기 임대 조건 신고대장

번호	신고일자	임대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임대주택위치	세대	규모(㎡)	세대수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비고
1	2013.09.16	김인숙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 212 한성아파트	104동 408호	39.97	1	25,000,000	-	2013.07.19~2015.07.18			
2	2013.09.13	정윤영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26번길 17-26 한도아파트	106동 104호	39.9	1	2,000,000	300,000	2013.09.03~2015.09.02			
3	2013.09.10	이진영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4동 1015호	38.49	1	3,000,000	360,000	2013.07.28~2014.07.27			
4	2013.09.10	이고은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6동 917호	38.49	1	5,000,000	350,000	2013.08.17~2014.08.16			
5	2013.09.09	지금옥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 샘마을아파트	102동 1408호	39.27	1	3,000,000	250,000	2013.07.12~2014.07.11			
6	2013.08.27	김상희		아산시 서부북로 973 배미서진아파트	108동 1210호	39.6	1	33,000,000	-	2013.06.12~2015.06.12			
7	2013.08.27	김상희		아산시 문화로 257-17 청솔아파트	106동 601호	59.988	1	10,000,000	350,000	2013.04.26~2014.04.25			
	2013.08.27	김상희		아산시 문화로 257-17 청솔아파트	106동 802호	39.994	1	3,000,000	350,000	2013.03.22~2015.03.21			
	2013.08.27	김상희		아산시 문화로 257-17 청솔아파트	108동 704호	59.988	1	65,000,000	-	2013.05.10~2015.05.09			
8	2013.08.22	허은경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212 한성아파트	101동 106호	59.76	1	43,000,000	-	2013.07.04~2015.07.04			

9	2013.08.14	한국토지 주택공사		아산시 외암로 1420 읍내주공 아파트		26.37	1,074	1,902,000	33,740	2013.10.01~2015.09.30				
									34,880					
									37,920					
									39,050					
								2,453,000	45,240					
									46,770					
									50,840					
									52,360					
								2,541,000	48,370					
									50,000					
									54,340					
									55,970					
								2,657,000	52,660					
									54,440					
									59,170					
									60,940					
								3,289,000	54,030					
									55,850					
									60,710					
									62,530					
								4,270,000	54,030					
									55,850					
									60,710					
									62,530					
						31.32	149	2,259,000	40,080					
									41,430					
									45,030					
									46,380					
								2,913,000	53,740					
									55,550					

									60,380				
									62,190				
								3,017,000	57,440				
									59,380				
									64,550				
									66,480				
								3,156,000	62,550				
									64,650				
									70,280				
									72,390				
								3,907,000	64,180				
									66,340				
									72,110				
									74,270				
								5,072,000	64,180				
									66,340				
									72,110				
									74,270				
10	2013.08.09	유일현		아산시 온중로22 용화주공3단지아파트	304동 1302호	49.65	1	5,000,000	350,000	2013.04.23~2015.04.22			
11	2013.08.08	장양희외 1인(지영)		아산시 번영로 113-27 양지빌딩	302호	18.96	1	3,000,000	320,000	2013.07.20~2014.07.19			
12	2013.08.06	청송조경건설(주)		아산시 온천동 1660번지	202호	16.16	1	2,000,000	350,000	2013.05.28~2014.05.27			
	2013.08.06	청송조경건설(주)		아산시 온천동 1660번지	302호	16.16	1	3,000,000	350,000	2013.05.08~2014.05.07			
	2013.08.06	청송조경건설(주)		아산시 온천동 1660번지	303호	20.65	1	1,200,000	350,000	2013.06.20~2014.06.19			
	2013.08.06	청송조경건설(주)		아산시 온천동 1660번지	304호	20.65	1	1,000,000	350,000	2013.05.13~2014.05.12			

	2013.08.06	청송조경건설(주)		아산시 온천동1660번지	402호	16.16	1	5,000,000	300,000	2013.07.15~2014.07.14			
	2013.08.06	청송조경건설(주)		아산시 온천동1660번지	502호	16.16	1	-	350,000	2013.06.03~2014.06.02			
13	2013.07.19	이화순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210 요진와이시티	203동 341호	49.798	1	120,000,000	-	2013.06.17~2014.06.16			
14	2013.07.18	장양희외1인(지영)		아산시 번영로 113-27 양지빌딩	501호	24.74	1	3,000,000	350,000	2013.06.22~2014.06.21			
15	2013.07.15	박영주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26 한도아파트	107동 704호	39.9	1	28,000,000	-	2013.07.12~2015.07.11			
16	2013.07.09	유일현		아산시 온중로22 용화주공3단지아파트	304동 1203호	49.65	1	10,000,000	400,000	2013.06.22~2014.06.21			
17	2013.07.09	김덕기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5동 903호	38.49	1	65,000,000	-	2013.06.24~2015.06.23			
18	2013.06.28	장양희외1인(지영)		아산시 번영로 113-27 양지빌딩	404호	18.93	1	3,000,000	350,000	2013.06.10~2014.06.09			
19	2013.06.27	정수명		아산시 온중로22 용화주공3단지아파트	309동 204호	59.99	1	20,000,000	400,000	2013.05.13~2014.05.13			
20	2013.06.27	안형민		아산시 외암로 1247 청솔아파트	111동 305호	39.994	1	-	320,000	2013.06.01~2013.11.30			
	2013.06.27	안형민		아산시 외암로 1247 청솔아파트	111동 601호	47.235	1	-	370,000	2013.06.01~2013.11.30			
	2013.06.27	안형민		아산시 외암로 1247 청솔아파트	111동 1108호	39.994	1	-	320,000	2013.06.01~2013.11.30			
21	2013.06.26	이고은		아산시 모산로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파트	105동 715호	38.49	1	3,000,000	380,000	2013.06.03~2014.06.02			
	2013.06.26	이고은		아산시 모산로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파트	105동 815호	38.49	1	5,000,000	350,000	2013.06.15~2014.06.14			
	2013.06.26	이고은		아산시 모산로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파트	105동 1818호	38.49	1	3,000,000	380,000	2013.06.18~2014.06.17			
	2013.06.26	이고은		아산시 모산로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파트	105동 914호	38.49	1	5,000,000	350,000	2013.06.16~2014.06.15			

22	2013.06.07	김선명		아산시 모산로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파트	104동 1416호	38.49	1	5,000,000	350,000	2013.06.20~2014.06.19			
23	2013.06.07	박경자		아산시 모산로126번길 17-7 삼정그린코아파트	104동 909호	38.49	1	65,000,000	-	2013.05.27~2015.05.26			
24	2013.06.04	김성엽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 212 한성아파트	104동 201호	39.97	1	25,000,000	-	2013.05.01~2015.04.30			

공고 제 2013 - 1403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3. 10. 15.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1 필 지	편입면적 (㎡)	소 유 자
염치읍 산양리 289-2	67.0	문종성
합 계	67.0	

○ 도로길이 : 21.2m

○ 도로너비 : 3.5~4.0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건축과 비치

공고 제 2013 - 1416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3. 10. 18.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1 필 지	편입면적 (㎡)	소 유 자
염치읍 강청리 159-5	28.0	김정예
합 계	28.0	

○ 도로길이 : 23m

○ 도로너비 : 2.5~4.0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건축과 비치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 제 2013-1424호

공 시 송 달

성 명 : 홍 진 우(미래에너지기술)

주소 또는 거소 :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671번길 5-39

서 류 의 명 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미래에너지기술)

서 류 의 내 용 : 미래에너지기술 창업감면 지방세 추징 과세예고

(취득세 : 13,937,870원 추징)

위의 서류를 2013년 10월 15일 ~ 18일 귀하에게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및 사업장 부재(이사감) 등 우편 송달이 불가능 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아산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0월 18일

아 산 시 장

문의처 : 아산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041-540-2634)

공고 제 2013 - 1429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3. 10. 21.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1 필 지	편입면적 (㎡)	소 유 자
염치읍 곡교리 70-10	19.0	이 순 례
합 계	19.0	

○ 도로길이 : 23.11m

○ 도로너비 : 4.0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건축과 비치

공고 제 2013 - 1430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3. 10. 21.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2 필 지	편입면적 (㎡)	소 유 자
염치읍 동정리 299-5	12.0	가야진장영농조합법인
염치읍 동정리 301-1	6.0	가야진장영농조합법인
합 계	18.0	

○ 도로길이 : 14.0m

○ 도로너비 : 1.5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건축과 비치

공고 제 2013 - 1437 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3. 10. 22.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4 필 지	편입면적 (㎡)	소 유 자
선장면 신성리 76-2	192	오연택
선장면 신성리 76-10	105	오연택
선장면 신성리 75-17	39	오연택
선장면 신성리 75-3	2	오연택
합 계	338	

○ 도로길이 : 80m

○ 도로너비 : 4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건축과 비치

아산시 공고 제 2013 - 1441 호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건 공시 송달 공고

귀하께 건축법 제79조, 제80조,『아산시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처리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61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0. 23.

아 산 시 장

1. 제 목

1)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4건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6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3.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4. 처분대상

대 상 지 주 소				위반내용	반송 사유	비고
연번	이름	주소	주민(법인) 등록번호			
1	(주)시스하이텍	충남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 10-2	110111-1******	무단신축	이사감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유신전자공업(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98(마북동)	134511-0******	무단공작물 축조	주소불명	
3	황영복	충남 아산시 신인동 232	580731-1******	무단신축	이사감	
4	하동례	충남 아산시 순천향로 649(법곡동)	451005-2******	무단신축	폐문부재	

5. 공고기간 : 2013.10.23. ~ 2013.11.12. (20일간)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의 고지서 발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1-540-2856)

아산시 공고 제2013-1451호

「온양전통시장 공공공지 조성사업」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온양전통시장 공공공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25.

아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2. 사업의 종류(명칭) : 온양전통시장 공공공지 조성사업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온천동 46-10번지 일원
   ※ 붙임 : 출입할 토지의 구역(내역) 현황 참조
4. 출 입 목 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자료 조사
5. 출 입 기 간 : 2013. 10. 30. ~ 조사 완료시까지
6. 출 입 자 : 측량·조사관계자 등
7. 기 타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청 경제과 (☎041-540-2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할 토지의 구역(내역) 현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및 명칭	주소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18필지)				504	504						
1	온천동	46-3	대	66	66	아산시	-	-	-	-	
2	〃	46-9	대	83	83	아산시	-	-	-	-	
3	〃	46-10	대	31	31	김중관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3-20 -301호	신우새마을금고	아산시 온천동 220-1	근저당권	
4	〃	46-11	대	6	6	김대환	아산시 온천동 46-11	-	-	-	
5	〃	46-16	대	79	79	송갑헌	아산시 온천동 33-33	신우새마을금고	아산시 온천동 220-1	근저당권	
6	〃	46-23	대	7	7	이칠희	아산시 온천동 46-24	-	-	-	
7	〃	46-24	대	7	7	강경자	아산시 온천동 46-24	-	-	-	
8	〃	46-25	대	18	18	최미선	아산시 온천동 1057 경남아너스빌APT 104-805	신우새마을금고	아산시 온천동 220-1	근저당권	
9	〃	46-26	대	34	34	아산시	-	-	-	-	
10	〃	46-27	대	23	23	아산시	-	-	-	-	
11	〃	46-28	대	13	13	아산시	-	-	-	-	
12	〃	46-29	대	83	83	안수영	아산시 실옥동 230	신우새마을금고	아산시 온천동 220-1	근저당권	
13	〃	46-30	대	23	23	안수영	아산시 실옥동 230	신우새마을금고	아산시 온천동 220-1	근저당권	
14	〃	46-31	대	7	7	권오운	아산시 온천동 47	-	-	-	
15	〃	46-32	대	3	3	권오운	아산시 온천동 47	-	-	-	
16	〃	47-40	대	9	9	안수영	아산시 실옥동 230	-	-	-	
17	〃	47-45	대	1	1	권오운	아산시 온천동 47	-	-	-	
18	〃	47-46	대	11	11	권오운	아산시 온천동 47	-	-	-	